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5가합557904 판결 [주식매매대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하늘, 성신영

피고1. B

2. C 주식회사

3.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두영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혜성

변론 종결2018. 6. 8.

판결 선고2018. 7.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중 소외 주식회사 E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4,244,825,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534,415,5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8.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주식매수대금청구

피고 B은 원고에게 4,59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이 사건 2017. 11.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부당이득반환청구

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7,828,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이 사건 2017. 11.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17,372,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이 사건 2017. 11.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퇴직금지급 관련청구

①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은 소외 주식회사 E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534,415,5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위 취지의 통지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예비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21,346,56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2018. 6. 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소방 설계, 소방설비기획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11. 7. 1. 피고 C의 일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소방시설점검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설립자이자 회장이고, 원고는 1999. 2. 3.부터 2012. 7. 1.까지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는 피고 C의 직원(직함은 부회장)으로,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D의 직원(직함은 고문)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F의 설립과 주식 배정

피고 B은 1992. 7. 9. 주식회사 F 설립 당시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0,000주를 발행하면서 자신에게 위 주식의 30%인 6,000주, 배우자인 G에게 10%인 2,000주, 형인 H에게 4%인 800주를 배정하고, 원고에게 25%인 5,000주를 배정한 후, 1992. 7. 3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다. 위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 1억 원은 피고 B이 대부업자로부터 이를 차용하여 1992. 7. 9.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가 회사 설립 후 이를 인출하여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협약 체결

피고 B은 2004. 3. 2.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F의 각자 대표이사로써 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F이 비상장 주식회사이고 최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는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퇴임을 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고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또는 피고 B이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2. 회사 또는 피고 B이 피고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주식의 평가방법은 국세청이 정한 별첨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식양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산재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3. 회사 또는 피고 B은 원고의 주식평가대금을 3개월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경우에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4.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 또는 피고 B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주식의 종류와 주식수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한다.

5.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고, 향후 3년간 회사 발전을 위하여 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회사 내의 점검사업부는 법인 분리하여 원고가 75%, 회사가 25%의 지분으로 하는 관계회사를 신규로 설립한다.

6.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단) 만약 피고 B이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회사 또는 원고가 이를 양수하고, 평가방법과 정산은 상기의 내용과 같다.

라. 피고 D의 설립과 주식 배정

피고 B은 2011. 7. 1. 피고 C의 회사분할로 인한 피고 D의 설립 당시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0,000주를 발행하면서 본인에게 위 주식의 30%인 30,000주, 배우자인 G에게 15%인 15,000주, 자녀인 I에게 4%인 4,000주를 배정하고, 원고에게 25%인 25,000주를 배정한 후, 2011. 12. 3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다.

마. 원고의 주식보유현황

주식회사 F의 주식의 25%인 5,000주를 보유하였던 원고는 위 회사가 2007. 11. 16. 법인명을 피고 C로 변경하고, 2011. 7. 1. 발행주식총수를 100,000주로 변경하면서 위 주식 보유 비율인 25%에 해당하는 피고 C 주식 25,000주를 취득하였고, 피고 C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피고 D의 발행주식총수 100,000주의 25%에 해당하는 25,000주를 취득하여 이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이하, 원고의

피고 C의 주식 25% 25,000주 및 원고의 피고 D의 주식 25% 25,000주의 상세내용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주식매수 협상결렬

원고는 2011. 7. 6. 피고 B에게 '주식양수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피고 C 또는 피고 B이 매수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 B은 2011. 7. 15. 원고에게 2,000,00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피고 C는 2012. 7. 3. 원고에게 위 주식을 2,050,000,000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2013. 3. 18. 세후 금액 2,500,000,000원을 제시하자, 피고 C는 2013. 3. 26. 세전 금액 2,500,000,000원을 제시하였으며, 2013. 6. 24. 피고 C 주식 매수대금 652,000,000원, 피고 D의 주식매수대금 1,848,000,000원 합계 세전 2,500,000,000원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결국 위 합의 역시 결렬되었고,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 B의 해지통보

피고 B은 2015. 3. 26.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C의 설립, 증자, 분사 등 과정에서 출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배정받은 피고 C 및 피고 D의 주식을 배정받게 하여 준 법률관계를 모두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아. 피고 C, 피고 D과 J 사이의 소송 진행 및 판결

피고 C, 피고 D은 원고의 아들 소외 J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6086호로 근로관계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J은 피고 D을 상대로 위 법원 2015가합26462호로 퇴직금 지급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6. 2. '위 피고들과 J 사이에 각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J은 피고 C에게는 307,828,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에게는 17,372,3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J의 반소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J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9218, 2016나922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0. 12.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은 2016. 11. 3. 확정되었다.

자. J의 이 사건 관련 판결에 의한 금원 반환

J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2017. 6. 7. 피고 C에게 307,828,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94,445,124원의 합계 502,273,364원을, 피고 D에게 17,372,3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7,534,733원의 합계 24,907,073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협약 제1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감정인 K, L의 각 부동산 시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인 M의 이 사건 주식 시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11. 7. 6.에 가장 근접한 2011. 12. 31.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평가방법을 채택하되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평가기관의 평균가액으로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4,244,825,000원이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244,8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2. 7. 1.에 가장 근접한 2012. 12. 31.을 기준으로 하는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4,594,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3조에서 피고 B은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평가하고, 3개월 이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11. 7. 6.로부터 주식평가에 소요되는 1개월 및 대금지급기한 3개월을 합한 4개월이 경과한 2011. 11. 6.에 가장 근접한 2011. 12. 31.을 기준으로 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B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협약은 본계약이 아닌 사전협약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는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협약이 사전협약에 불과하고 본계약 체결이 무산되어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서에는 매매대상을 원고 또는 피고 B이 보유한 F의 주식으로 특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행사 후 대금 지급의 시기와 연체이율, 대금산정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F의 주식은 앞서 인정사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사전협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식매매계약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협약은 피고 B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협약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일반적인 주식양수도 약정이 아니라 피고 B과 원고가 각자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회사의 계산으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였으므로 피고 B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 주체를 피고 B 또는 피고 C로 정한 사실(제1조), 주식매매대금을 3개월 내에 지급해야 할 주체 역시 피고 B 또는 피고 C로 정한 사실(제3조)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협약은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으로서 피고 B에게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의무 및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협약상의 상호 신뢰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상호 신뢰유지의무 및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서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한다'고 정한 사실(전문), '원고는 피고 C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고 향후 3년간 회사 발전을 위하여 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정한 사실(제5조)은 인정되나, 피고 B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원고가 위 신뢰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의무위반이 이 사건 협약의 해제사유나 무효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도과 항변 피고 B은, 이 사건 협약은 매매의 예약이고,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으로서, 원고는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매수인을 특정하고 양도할 주식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에게 주식매매대금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 제1조에서는 '원고가 퇴임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고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 C 또는 피고 B이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원고는 위 권리를 퇴직시 또는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2. 7. 1. 피고 C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기 전인 2011. 7. 6. 이미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퇴직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주식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2.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2011. 7. 6.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시점은 원고의 퇴임 이전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협약 제1조는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점을 '원고의 퇴임시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6.자 내용증명우편에서 '2012. 7.자로 예정된 퇴임을 앞두고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퇴임시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는 퇴임을 앞두고 이 사건 주식 평가 및 대금수령을 위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B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주식매매대금채권과의 상계항변 피고 B은, 2017. 11. 3. 이 사건 협약 제6조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써 발생하는 원고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협약 제6조 단서에서 '만약 피고 B이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회사 또는 원고가 이를 양수하고, 평가방법과 정산은 상기의 내용과 같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 B이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응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②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위 주식매수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에서는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를 '원고의 퇴임시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로 정한 반면, 피고 B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으로서는 이 사건 협약시인 2004. 3. 2. 이후부터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1. 3.에 위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이미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B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상계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6) 피고 D의 주식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 B은, 피고 D의 주식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협약의 대상인 주식회사 F의 주식의 25%인 5,000주는 앞서 살핀 인정사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경되었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의 주권교부 등 의무와 동시이행항변 피고 B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고, 피고 C, 피고 D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및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피고 B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② 원고가 위 의무의 이행 전까지는 원고의 주식매매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주식양도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다.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상법 제336조 제1항),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지체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주권 및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이를 준비해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할 것을 최고하면 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11. 7. 6.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주식에 관한 주권 및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인 피고 B에게 교부하거나, 이를 준비해 두고 이를 통지하여 수령할 것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주식에 관한 주권 및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지급에 관하여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 및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244,8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주권과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이외에 피고 C, 피고 D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도 피고 B의 주식매매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위 주식매매대금의 지급과 어떠한 견련관계에 있거나 공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제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고의 주주권 상실 주장¹⁾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되, 피고가 원고 C의 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및 원고들에 대한 신뢰관계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로 증여하였으나, 원고는 재임기간 동안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이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위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의무 위반 또는 원고의 배신행위로 인한 신의칙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니 원고의 주식매매대금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핀 인정사실과 위 인정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원고들과 신뢰·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부담으로 하여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부담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그 귀책사유로 위 부담에 해당하는 성실한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상호신뢰·우호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협약서(갑 제5호증)는 일종의 처분문서로서, 원고의 주식매도청구권과 그에 대한 피고 B 또는 피고 C의 매수의무 또는 그와 반대로 피고 B의 주식매도청구권과 원고 또는 피고 C의 매수의무가 주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부담부로 증여한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달리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에 관한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② 피고 B과 원고가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사건 협약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 B이 그 주장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최소한 원고가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 C를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도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기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진다.

③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전횡, 배임, 배신행위들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바, 위 행위들의 대부분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2008. 3. 24. 50,000,000원, 2011. 6. 21. 78,945,000원을 이익배당금으로 지급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만일 피고 B과 원고가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 C나 피고 B으로서는 위 행위들을 원인으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위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244,8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인 소외 J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2017. 6. 7. 피고 C에게 502,273,364원을, 피고 D에게 24,907,073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피고 회사들이 J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J이 유학을 다녀오는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된 돈이지만, 이는 본래 원고에게 지급되었던 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그 액수만큼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결국 위 액수만큼 피고 회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위 피고들은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기고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는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급부행위의 성질이나 급부자(손실자)의 해당 급부행위에 관한 책임과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6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들이 원고가 지급받아온 급여의 일부를 감액하고 이를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J의 급여로 지급한 후 이 사건 관련 판결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감액된 자신의 급여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J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감액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J이 위 돈을 피고

회사들에게 반환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들이 위 돈을 지급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외 주식회사 E에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구하는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이고, 소외 주식회사 E은 위 법 제2조 제13호 소정의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퇴직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피고 D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의 주체임은 동일하다.

따라서 위 은행이 피고 D으로부터 퇴직급여지급신청서 및 임원퇴직급여한도금액확인서 등 지급관련서류를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D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하면 족하고, 그 이행보조자인 위 은행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구하는 위 청구는 이를 별도의 소로써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1999. 2. 3.부터 2012. 7. 1.까지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는 피고 C의 부회장으로,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D의 고문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와 피고 D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원고의 보수 및 퇴직금의 액수를 결의한 사실, 위 결의에 근거하여 피고 D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하여 2014. 1.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E의 원고

명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돈의 합계액이 522,177,513원, 2013. 12. 31.자 기준 평가금액이 534,415,59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534,415,59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D의 퇴사 다음날인 2014. 1. 1.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7.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① 피고 C 또는 피고 D은 소외 주식회사 E에 이미 원고의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사용자 부담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므로 다시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3년 또는 상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③ 원고 명의의 퇴직연금 적립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적립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 C 및 피고 D이 위 은행에 이미 원고의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사용자 부담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 C 퇴사일인 2013. 12. 31.부터 3년 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2. 16.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③ 피고 D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퇴직연금 적립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적립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항변 내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중 소외 주식회사 E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이동연

판사 박성용

판사 최유빈

별지

증여와 관련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